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정관

제정 2005. 7. 6. 정판 제 4호 개정 2005. 8.29. " 제 6호 개정 2005.12.19. " 제11호 개정 2007. 3.16. " 제62호 개정 2007.11.13. " 제70호 개정 2009. 2.18. " 제95호 개정 2010. 2.10. " 제116호 개정 2010. 7.16. " 제124호 개정 2013.11.28. " 제166호 개정 2020.11. 6. " 제258호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"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"(이하 "법인"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민족문화유산(지정문화재, 비지정문화재, 매장문화재 를 포함한다)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,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·보급하고, 아울러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 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문화재 조사, 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
 - 2.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
 - 3.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전시
 - 4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업 등의 위임, 위탁사업
 - 5.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
 - 6.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임 원

제5조(임원의 구성) ①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1인
- 2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(이하 "연구원장"이라 한다) 1인
- 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(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포함한다)
- 4. 감 사 2인
- ②연구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선임)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여 이사장 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, 연구원장, 충청북도의 담 당국장은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- ②감사는 2인 중 충청북도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7조(이사장)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된다.
- 제8조(연구원장) ①연구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이 사장이 임명한다.
 - ②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③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연구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) ①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②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종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.
 - ③선임이사와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시에는 이사회에서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 - ④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행위

-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⑤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- 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청북도의 담당국장, 연구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- ④상근 이사인 연구원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되 다른 직무에 종 사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3. 정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4. 제1호 및 제2호,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 장(이하 "청장"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는 일
 - 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- 6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
- 2.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3.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4.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

제 3 장 이 사 회

- 제12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 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제1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 - 1. 법인의 예산, 사업계획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- 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- 5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 - 6.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- 7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- 8. 지소 또는 산하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
 - 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- 10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14조(신분보장)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법령·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
 -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
 - 3.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 가 의결한 경우
- 제15조(임원의 보수) ①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,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상근 이사인 연구원장은 유급으로 하되, 그 기준은 별도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16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, 11월에 개최한다.
 - ②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

-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장이 소집한다.
-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목적, 일시, 장소, 안 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또는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한다.
- 제17조(의결정족수 등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변경 및 재단해산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서면결의) ①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9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- 2.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- 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,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제20조(회의록 및 보고) ①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한 이사 2명이 기명·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이사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산 및 회계

- 제21조(재산)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- ②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(별표1)
 - 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, 건물 등 부동산
 - 3. 출연금 및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- 4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
 - 5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 - ③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.
 - ④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- 제22조(재산의 평가)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- 제23조(재산의 관리) ①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,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- ②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- 1. 법인의 임원
 - 2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
 - ③제2항 각 호 이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- ④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잉여금의 처리)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 - 1. 이월손실금 보전

- 2.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
- 3.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
- 제25조(경비의 조달방법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.
- 제26조(차입금) 법인이 자금의 정기차입(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)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7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- 제28조(사업계획과 예산)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경유,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명세서
 -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
 - ②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,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한다.
 - ③법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 - 1.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
 - 2.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
 - 3.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
 - ④법인의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9조(결산)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, 감사결과보고서,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,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30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) ①법인은 매년 3월 이전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1. 정 관
- 2.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
- 3. 이사회 회의록
- 4. 수입·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
- 5. 자산대장
- 6.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된 문서
- 7.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
- ③제2항 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영구, 제4호의 서류는 5년 이상, 제6호·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31조(공고의 방법)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충청북도 내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운영위원회

제32조(운영위원회) 삭제 <2020.11.06.>

제 6 장 조직 및 직원

- 제33조(직제 및 정원) 법인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4조(직원) ①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와 관련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당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.
 - ②직원의 인사, 복무 보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5조(운영규정) 삭제 <2020.11.06.>

제 7 장 보 칙

제36조(정관의 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청장의 허가

를 받아야 한다.

- 제37조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) ①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제39조(시행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 규정제정 이전의 인사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의 관련조례와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40조(준용)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청장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,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사업연도)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.
- 제3조(설립전 업무대행) 법인 설립전 재단의 기능은 도지사가 대행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설립당시의 임원)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은 "별표 2" 와 같다.
- 제5조(예산안의 승인) 본 정관 제28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예산안 승인과 예산면성기준의 설정은 도지사의 출연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로 한다.
- 제6조(경과규정) 최초의 연구원장은 본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선임하여 취임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법인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 및 적용일)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

2005년11월2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

구 분	금 액	비 고
현 금	200,000,000원 (이억원)	

[별표 2]

재 단 법 인 임 원

□이 사

구	분	소속	직	위	성	명	비	고
	계	11 명						
이사	당연직	충청북도	도 ス] 사	ી ર્	실종		
	"	충청북도	문화관	광국장	박건	병국		
	"	도의회관광건설위원회	위 원	· 장	심총	홍섭		
	"	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	원	장	이종	를 배		
	선임직	한국전통문화학교	석좌교수		정지	H훈		
	"	전통건축연구소	대	丑	손연	병식		
	"	단국대학교 박물관	관	장	정영	경호		
	"	도문화재위원회 3분과	위 원	· 장	최근	- 영		
	"	충주대학교 (한국사)	교	수	최일	실성		
	"	충청북도개발연구원	원	장	이ㅌ	개일		
	"	충청북도향토사연구소	소	장	김 아	ᅨ식		

□ 감 사

구	분	소속	직	위	성	명	則	고
	계	2 명						
감사	당연직	충청북도	문화예	술과장	박성	웅희		
	선임직	김동완세무회계사무소	공인회	회계사	김등	F 완		